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4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박형수 · 유상범 · 이종배

김소희 • 권성동 • 김성원

박상웅 · 임이자 · 김승수

윤영석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 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 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등) ①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u>수입수산물</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